

인천지방법원 2024. 7. 3 선고 2024가단3236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9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-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, 7, 12, 11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65.19㎡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을 원상회복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3. 각하 부분

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만으로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그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의 의미와 기준이 되는 시점 또는 상태, 내용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부분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.

판사 박상훈

별지